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이인영 · 채현일 · 전진숙  
이정문 · 노종면 · 이강일  
강준현 · 박상혁 · 민병덕  
김남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,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,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).



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9항 중 “공정거래위원회에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⑪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9항에 따른 심사 요청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)은 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제11조제11항”을 “제11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의 서류보완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

신고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<p>제30조(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<u>제11조제11항</u> 단서를 준용한다.</p>	<p>제30조(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u>제11조제12항</u>----- -----.</p>
---	--